

입찰유의서(의료장비)

□ 입찰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본 입찰유의서(의료장비),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요기관 설치조건 및 시설현황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 확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백단위 절삭)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투찰금액에는 수요기관 납품장소까지의 포장·운반비 및 설치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내자 구매 기준)
3.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의 금액 표시를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4. 입찰참가자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입찰참가자는 입찰 물품(제안 모델)이 물품규격서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수요기관의 사용부서로부터 적격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찰 결과 부적격자 또는 적격여부 미확인자가 응찰하여 낙찰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공공입찰 제출용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 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신고)확인 및 GMP/GI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학교법인 일송학원 또는 수요기관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한다. 단, 관련 법에 의거하여 GMP 심사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될 경우 재입찰(투찰) 여부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10. 입찰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일송학원과 입찰참가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평가 결과 내용 및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학교법인 일송학원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유의서(의료장비)를 입찰등록 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입찰유의서를 포함하여 입찰내용 및 계약조건, 계약방식 등 모든 조건을 수락(승낙)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을 포기할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현금으로 귀속한다.
14.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입찰등록 후 제안서 발표에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한다.
15.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서 또는 가격제안서를 미제출할 경우 입찰등록 무효 처리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계약체결 시까지 수요기관에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요기관에 현금으로 귀속 조치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다.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에 있어 수요기관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검수 합격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한다.

3. 납품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물품을 계약기간 내에 설치(시운전, 검사필 포함)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나.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지정장소까지 운반·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한림대학교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한림대학교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납품된 물품의 검수(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입찰유의서(의료장비)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며, 당해 입찰에 있어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